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담·치료 권고 미이행 시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1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상담·치료 권고 미이행 시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23.
3. 회 부 일 : 2025.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하여 학교장의 상담 권고,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일부 보호자의 경우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사례 또한 꾸준히 문제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호자 의무 이행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상담·치료 권고 미이행 시 보호자도 학생과 함께 상담·치료를 받도록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치료 권고에 대해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또한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제4항 후단 및 제68조제1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법률 제20862호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	④ ----- ----- ----- ----- ----- ----- ----- ----- -----

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⑤·⑥ (생략) 제68조(과태료) <u><신설></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 -----. <u>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u> ⑤·⑥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5제4항 후단에 따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
--	---

나. 검토의견

- 최근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겪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법률 제20862호)¹⁾가 신설되어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임.

1)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862호, '26.3.1. 시행)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①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전문가”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상담 또는 제2항에 따른 치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서·행동 문제로 학교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어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상담 권고, 제2항에 따른 치료 권고·지원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치료의 기준·내용 및 절차와 전문가의 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조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제1항),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치료 권고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제2항). 또한 보호자는 상담 및 치료 권고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며(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음(제4항).

□ 개정안은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미이행할 경우,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 또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학부모의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학생 정서·행동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전문적 개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기 개입 및 학교 적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고, 교직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나 교육활동 방해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도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개정 대상 조문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는 2026년 3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가 아직 없는 상황임. 따라서 시행 이후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입법이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과 유사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18조의5 신설 당시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한차례 제외된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당시 논의에서는 보호자 협조 의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태료까지 부과할 경우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결안에서는 과태료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음.

□ 셋째, 개정안 시행 시 학교현장의 갈등 심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도 정서·행동 상담 권고에 대한 일부 보호자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자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른 상담 및 치료 권고와 권고 미이행에 따른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아직 시행 전인 제도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보호자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
- 과태료는 통상 행정질서 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수단인 바, 보호자로서의

의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 제도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우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25.4.1.신설 → '26.3.1. 시행 예정

○ 시·도교육청

(광주): 신중검토

- '상담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강제적 의미를 가지며, 본인 동의가 성인 치료의 기본 원칙인 현행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법적 의무화를 통해 학교와 보호자의 관계 악화, 보호자의 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

(충남): 신중검토

-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이에 반발한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보복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음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민·형사상 면책)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문 의 처

02)6788-5184